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06 0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여 사립학교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에 대해 사립학교의 요청 등에 따라 교육감이 자문 또는 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어 시설사업 지원에 대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은 지원대상기관의 요청이나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이 사업계획서의 작성부터 준공검사까지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의 집행 시에 지원대상기관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함(안 제9조의2)

다. 지원대상기관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 시 교육감이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제재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 함(안 제14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6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tico3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에 있는”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으로, “관하여 필요”를 “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당해년”을 “해당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을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에 한한다”를 “한다)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을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업계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은 지원대상기관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설계도서 작성(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말한다)
3. 계약에 관한 사항(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등을 말한다)
4. 설계변경
5. 주요 공정별 중간 점검 확인
6. 기성 및 준공 검사

제7조제1항 중 “내용 및 소요경비 기타”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각 호”를 “각 호”로, “교부여부”를 “교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9조 중 “달성함에”를 “달성하는 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원금의 집행)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건설 관련 법령 등 준수
2. 공사 시공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3.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기관에서 부담

제10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지한 때”를 “폐지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중 “인정된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제13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지침이 정한 기일내에 다음 각호”를 “교육감이 지원지침으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시한”을 “개시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료된”을 “종료되었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목적”

을 “지원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상황”을 “회계 상황”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재)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재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계승인 전에 미리 집행한 경우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및 지원지침에 따른 계약방법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정산,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5. 교육감의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기타 이”를 “이”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시행세칙)”을 “(시행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립학교법 제43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사립학교법</u> 」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 ----- 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 각 호와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u>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를 말한다.</u>	2. ----- 「 <u>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u> 」에 따라 ----- -----.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u>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u>	3.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해당연----- -----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 제3조(지원대상기관) ① ----- ----- ---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한다) 로 한다.
1.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2. 그 밖에 ----- -----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 ----- . 이 경우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하 “지원금”이라	제4조(지원대상사업) ----- -----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현행	개정안
한다)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 교육</u> 지원을 위한 사업 4. (생략) 5. <u>기타</u>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 (생략) 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u>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 <u><신설></u>	-----. 1. · 2. (현행과 같음) 3. <u>특성화고등학교</u>-----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제5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u> ③ <u>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은 지원대상기관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다.</u> 1. <u>사업계획서 작성</u> 2. <u>설계도서 작성(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말한다)</u>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 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u>내용 및 소요경비</u>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계약에 관한 사항(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등을 말한다)</u> 4. <u>설계변경</u> 5. <u>주요 공정별 중간 점검 확인</u> 6. <u>기성 및 준공 검사</u>
② (생략)	제7조(지원금 신청) ① ----- ----- ----- --- <u>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u> - ----- -----.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u>교부여부</u>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 --- <u>제7조에 따른</u> ----- ----- ----- --- <u>각 호</u> ----- ----- <u>교부 여부</u> ----- -----.
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u>적합여부</u>	1. ----- ----- <u>적합 여부</u>
2. 지원사업 내용의 <u>적정여부</u>	2. ----- <u>적정 여부</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u>기타 지원지침과의 적합여부</u>	5. <u>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u>

현행	개정안
제9조(지원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에 <u>달성함에</u>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조건) ----- ----- ----- ----- <u>달성하는 데</u> ----- -----.
<신 설>	제9조의2(지원금의 집행)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건설 관련 법령 등 준수 2. 공사 시공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3.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기관에서 부담
제10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u>지체없이</u>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 ----- ----- <u>지체 없이</u> ----- -----.
제13조(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	제13조(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 제10조에 따라 -----

현행	개정안
정 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u>사용한 때</u>	1. ----- <u>사용한 경우</u>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u>폐지한 때</u>	2. ----- ----- <u>폐지한 경우</u>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u>아니한 때</u>	3. ----- ----- ----- <u>아니한 경우</u>
4. <u>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u>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u>인정된 때</u>	5. ----- ----- ----- ----- <u>인정되는 경우</u>
6. <u>지원사업의 지원금신청 및</u>	6. <u>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u>

현행	개정안
<u>각종보고에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u> 7. <u>기타</u>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제14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u>지원지침이</u> 정한 기일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을 <u>개시한</u>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사업이 <u>종료된</u>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u>기타</u>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보고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u>지원목적</u>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u>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u> 7. <u>그 밖에</u> ----- ----- 받은 경우 제14조(보고와 감독) ① ----- ----- <u>교육감이 지원지침</u> <u>으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u> ----- -----. 1. ----- <u>개시하였을</u> --- ----- 2. ----- <u>종료되었을</u> --- ----- 3. <u>그 밖에</u> ----- ----- 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u>----- ----- ----- -----. ③ ----- ----- ----- <u>지원 목적</u> ----- ----- ----- -----. ④ -----

현행	개정안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지원사업의 진도와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 회계 상황----- -----. 제14조의2(제재)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재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계승인 전에 미리 집행한 경우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및 지원지침에 따른 계약방법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정산,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5. 교육감의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73조, 제73조의2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 ----- -----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73조(벌칙) 제73조의2(벌칙) 제74조(과태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췌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②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할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실·국(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7. 기타 문제점		
실·국(지역)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